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81

발의연월일: 2025. 3. 26.

발 의 자:조지연·구자근·장동혁

서명옥 · 엄태영 · 최수진

박준태 · 강선영 · 강대식

이인선 · 최은석 · 김소희

임이자 • 박덕흠 • 박정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 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 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운 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가"를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참전유공자의"를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참전유공 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배우자
- 2. 자녀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료지원) ① <u>참전유공자가</u>	제7조(의료지원) ① <u>참전유공자,</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	
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	
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	
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u>참전</u>	② <u>참전유</u>
<u>유공자의</u> 진료를 국가 또는 지	<u>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u>
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	
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	
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7조의2(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배우자
- <u>2. 자녀</u>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유족 또는 가족